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,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·투자·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함(안 제3조제8호의3 신설 등).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,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‘적절한 규모’가 ‘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’임을 명시함(안 제7조 및 제32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, 특히 안 제33조의2는 농업 및 식품산업에 더하여 그 밖의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려는 것임.

그런데,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14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)제2항의 기본계획 포함 사항 중 정부의 시책(제3호)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 조달 방안(제4호)도 ‘그 밖의 농산업’이 함께 포함될 필요가 있으나,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, 이를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,

같은 맥락에서 현행법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및 제57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 등의 국제협력)제1항도 ‘그 밖의 농산업’이 함께 포함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-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농업·농촌 및 <u>식품산업</u> 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	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(현행과 같 음)	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----- -- <u>식품산업과 그</u> <u>밖의 농산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4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) ①	제14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) ①	제14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) ①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농업·농촌 및 식 품산업 발전계획 (이하 “기본계획” 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	② (현행과 같음)
1. <u>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의</u> 발 전 목표와 정책 의 기본방향	1. <u>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</u> ---	1. (개정안과 같 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	2. (현행과 같음)
3. 농업·농촌 및 <u>식품산업에</u> 관 하여 정부가 추 진하여야 할 시 책(농가소득 안 정을 위한 시책 을 포함한다. 이 하 제4호에서 같다)	3. (현행과 같음)	3. ----- -- <u>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</u> ----
4. 농업·농촌 및 <u>식품산업에</u> 관	4. (현행과 같음)	4. ----- -- <u>식품산업과 그</u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건
한 시책을 추진 하기 위한 재원 의 조달방안		<u>밖의 농산업</u> ----- ----- ----- -----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	5. (현행과 같음)
6. <u>농업경영비 절</u> <u>감 등 그 밖에</u> <u>농업·농촌 및</u> <u>식품산업의 종</u> <u>합 적·계 획 적</u> <u>발전을 추진하</u> <u>기 위하여 필요</u> <u>한 사항</u>	6. <u>농업경영비 절</u> <u>감 등 농업·농</u> <u>촌 및 식품산업</u> <u>과 그 밖의 농</u> <u>산업</u> ----- ----- ----- -----	6. (개정안과 같 음)
제57조(<u>농업·농촌</u> <u>및 식품산업 분야</u> <u>의 국제협력</u>) ① 정부는 <u>농업·농</u> <u>촌 및 식품산업</u> <u>분야의 국제협력</u> <u>을 증진시키기 위</u> <u>하여 농업·농촌</u> <u>및 식품산업 정책</u> <u>에 관한 정보의</u> <u>교류, 농업 및 식</u> <u>품산업 인력·기</u>	제57조(<u>농업·농촌</u> <u>및 식품산업 분야</u> <u>등의 국제협력</u>) ① ----- ----- <u>식품산업 분야</u> --- ----- ----- <u>농업·농</u> <u>촌 및 식품산업과</u> <u>그 밖의 농산업</u> <u>분야 정책에 관한</u> <u>정보의 교류, 인</u>	제57조(<u>농업·농촌</u> <u>및 식품산업등</u> <u>분야의 국제협력</u>) ① ----- ----- <u>식품산업과 그</u> <u>밖의 농산업 분</u> <u>야</u> ----- ----- <u>농업</u> <u>·농촌 및 식품산</u> <u>업과 그 밖의 농</u> <u>산업 분야 정책</u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건
<u>술의 교류, 농업</u> <u>관련 국제기구 활</u> <u>동 참여</u> 등에 필 요한 정책을 세우 고 시행하여야 한 다.	<u>력·기술의 교류,</u> <u>국제기구 활동 참</u> <u>여</u> ----- ----- ----- .	<u>관한 정보의 교</u> <u>류, 인력·기술의</u> <u>교류, 국제기구</u> <u>활동 참여</u> ----- ----- ----- --- 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현행과 같음)

○ 그 밖에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병 섭)